

# 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
255

2023. 9. 11.

복지환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3. 8. 30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3. 8. 30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9. 11.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남양주시 아동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장(章)으로 구분(안 전체)
- 조례의 법적 근거 및 아동의 4대 권리 명시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 보조(안 제3조~제5조)
-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항 정비(안 제6조~제15조)
-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비(안 제16조~제23조)
-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24조~제30조)
- 아동권리 ombudsman 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31조~제34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유엔의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 있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·보호·발달·참여권을 조례에 명시하고 「아동복지법」 개정 등 법적·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「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
- ‘아동의 권리’ 정의 조항 신설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비 하였으며, 예산 지원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과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ombudsman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.
- 아울러 아동에게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고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

### 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### 5. 토론요지 : 없 음

### 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### 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